환경친화적 기업 경영(7)
-ESSD와 기업 경영-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목차

Ⅰ. 지속가능한 개발이념과 실현 수단
Ⅱ. 지구환경문제와 기업의 당면 과제
1. 환경문제와 기업
2. 환경경영의 도입
3. 환경 및 경영요소의 통합
Ⅲ. 환경경영 표준과 유사 프로그램
1. 환경경영규격의 생성 배경
2. 국제규격의 종류 및 내용
3. 다른 환경경영 원칙 및 프로그램
4. 국내 제도 및 운영 실태
5. ISO 14001/14004/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비교
Ⅳ. 환경경영 도입에 따른 기본 전제
1. 환경경영의 기본원리와 도입에 따른 이점
2. 환경경영의 도입에 따른 실천전략
3. 성공적인 환경경영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4.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12월 29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1996년 7월 13일, 시행규칙은 8월 13일,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은 9월 30일자로 공포되었다. 동법률의 입법체계를 보면 〔 표 3 〕과 같고 입법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정이유

국제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중인 환경경영규격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기반조성 등 우리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생산공정개선, 환경설비산업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 3조).
-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료 조달, 생산, 유통 등 기업활동전반에 걸친 실천과제를 발굴

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법 제4조).

– 종합시책과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

〔표 5〕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령체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총칙(1장) 목적(1) 정의(2)	목적(1)	목적(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2)	연도별 시행계획(2)	청정생산기술개발센터의 운영(2)
종합시책(3)	사업자단체(3)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3)
산업환경실천과제(4)	개발사업의 출연 등(7)	청정생산기술개발정보의 유통기관(4)
설비자금 등 지원(5)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4)	지역시범사업의 실시(5)
기술개발사업 지원(6)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실시(5)	
청정기술개발센터 지원(7)	기술료의 징수 등(8)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추진 등(8)	총괄주관기관(6)	
국제협력의 촉진(9)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 지원(9)	
환경설비품질인증(10)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11)	
공제사업(1)	환경설비품질인증의 실시(12)	
보조금 지급(12)	광제사업(13)	
민간추진본부(13)	보조금(14)	
지역협의회(14)	민간추진본부(15)	
환경경영체제의 인증(3장)	환경경영진단지도(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6)
환경경영의 촉진(15)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범위(17)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7)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16)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18)	인증기관명칭의 변경신고 등(8)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17)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19)	인증업무규정(9)
환경경영체제 인증(18)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20)	인증심사기준(10)
환경경영체제인증의 표시(19)	연수기관의 지정취소 등(21)	환경경영체제인증 등(11)
연수기관의 지정(20)		인증의 표시(12)
연수기관의 지정취소 등(21)		연수기관의 지정기준(13)
심사원(22)		연수기관의 지정신청등(14)
인증비용 등(23)		연수기관명칭 등의 변경신고 등(15)
		연수업무규정(16)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17)
		인증심사원의 자격절차 등(18)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19)
		협의(협의)
보칙(4장)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22)	
우수사례의 발굴, 홍보(24)	청문절차(23)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25)	심의회의 심의사항(24)	
청문(26)	심의회의(20)	
산업환경정책심의회(27)	수당(27)	
권한의 위탁(28)	권한의 위탁(28)	
벌칙(5장)		
벌칙(29)		
양벌규정(30)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31)		
부칙		부칙
시행일(1)		시행일(1)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대한 준비행위(2)		인증기관 ·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2)
		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심사원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4)

시하는 생산공정개선, 설비개체 및 신, 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5조).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함(법 제6조 내지 제8조).

– 환경설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법 제10조).

–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경영활동을 행하도록 하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실시 등 환경경영인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15조 내지 제23조).

– 통상산업부장관은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 중소기업청은 이법 시행전에 환경경영 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부칙).

동법하에서의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련기관과 역할의 상호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4.3.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4.3.1. 생성배경 및 경과

ISO 14000 제정 실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규격)–'96. 9. 1 제정시행

1) 공업진흥청(현재 관련업무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수행) 주관으로 1995년 1월 환경경영 시범인증제도를 도입

① 한국품질환경인증센타 등 5개 기관을 후보인증기관으로 지정(37개업체 시범인증서 교부)

② 한국표준협회를 후보 연수기관으로 지정(심사원보 232명 양성)

2) 1996년 7월 국립기술품질원이 환경경영 시범인증사업실시 계획을 공고 제2차년도 시범인증 사업추진 중

① 후보인증기관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등 4개 기관

② 후보연수기관 : 한국표준협회 등 2개 기관

③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96. 8월~동 9월

④ 인증은 ISO DIS 14001, 심사는 ISO DIS 14011(환경심사지침)을 적용

3)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규격)의 제정실시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95. 12. 2), 동 시행령('96. 7. 13), 동 시행규칙('96. 8. 13)이 제정 공포되므로서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기반이 구축됨.

4.3.2. 근거 및 내용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중 관련규정 발췌

1. 환경경영의 촉진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1) 중소기업진흥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진단 · 지도실시(영 제 16조①)

2)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를 환경경영 진단기관으로 지정, 지도 · 진단대행(영 제 16조②)

3) 중소기업진흥청장은 환경경영 진단 · 지도계획 수립 고시(통상부장관과 협의, 영 제 16조③)

– 환경경영의 진단 · 지도의 방법 · 절차

– 환경경영 진단기관의 지정

– 환경경영진단, 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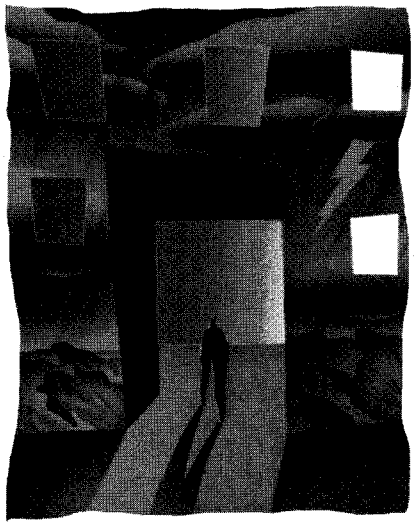

2.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법 제 16조)

1) 인증기관의 지정과 인증범위(법 제 16조 ①)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법 제 28조, 영 제 28조)

– 인증업무의 범위는 통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영 제 17조 ①)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통산부령이 정하는 심사지정기준에 적합(법 제 16조 ②)

– 심사지정기준은 통산부령으로 정하되 환경부장관과 협의(법 제 16조 ⑤)

– 인증기관의 요건(규칙 제 6조 ①~③)

① 법인 또는 단체(시험. 연구기관 포함)

② 인증업무의 수행범위(규칙 제 7조 ①) 별도 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기타 능력을 구비

③ 인증업무규정(규칙 제 9조)에 따라 인증업무수행 능력의 구비

3)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규칙 제 7조)

–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신청(규칙 제 7조 ①)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② 사업계획서

③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

④ 인증기관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통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인증업무 규정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지정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인에게 심사 계획을 통보, 계획에 따라 심사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수행할 인증수행범위를 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규칙 제 17조 ②)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할때 소정서식의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명칭,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증수행범위,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규칙 제 17조 ③)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인증수행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지정방법에 관하여 준용

4)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신고 등(규칙 8조)

– 인증기관이 그 명칭 또는 사업소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이 1월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 8조 ①).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 8조 ②)

① 변경된 인증기관의 명칭

②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

③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인증수행범위

④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폐지의 경우에는 그 폐지 년월일

5) 인증기관 업무 규정의 승인(변경)(법 제 16조 ③)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변경포함)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규칙 제 9조 ①).

– 인증업무규정에 포함될 사항(규칙 제 9조 ② 각호)

①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국내외 인증기관간의 인증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④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⑤ 인증심사원 기타 소속직원의 인증과 관련된 자문금지 등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통산부 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인증기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법 제 16조 ④)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법 제 28조, 영 제 28조)
– 통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영 제 18조).

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법 제 17조)

– 통상산업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 17조).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반드시 취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때
③ 지정기준(법 16조 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따른 조치 및 세부기준
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영 19조 ①)
②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영 19조 ②)

4. 환경경영체제 인증(법 18조)

1)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법 18조 ①)

2)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법 18조 ②)
– 인증심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함(규칙 제 10조)
–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규격 적용(규칙 제 10조)
※ ISO 14001규격은 '96. 12. 7일자로 한국산업규격으로 수용됨

3)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업무 규정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규칙 제 11조 ①)

4)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환경경영체제 인증(법 제 18조 ③, 규칙 제11조 ①)
– 인증기관은 그가 인증을 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업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제 11조 ②).

5) 인증절차 및 그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함(환경부장관과 협의, 법 제 18조 ④, ⑤)
– 인증기관은 인증 및 그 사후관리에 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장에게 보고(규칙 제 11조 ③)

5.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표시(법 19조)

1)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내용의 표시 및 홍보를 할 수 있다(법 19조 ①).
– 인증표시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함(규칙 제 12조 ①)
– 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송장, 광고 등에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규칙 제 12조 ②)
–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인증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인증표시를 제외)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자가 생산한 제

품임을 홍보할 수 있다(규칙 제 12조 ③).

–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당해기관이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임을 업무규정, 절차나 지침을 기재한 문서, 교재, 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규칙 제 12조 ④)

6. 연수기관의 지정(법 제 20조)

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에 관한 지도, 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 20조 ①).

2)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산부령으로 정한다(법 제 20조 ④).

–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규칙 제 13조).

① 인증과 관련한 지도 또는 연수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교재, 강사 등을 구비

③ 연수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행할 능력 구비

–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규칙 제 14조)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② 사업계획서

③ 연수설비현황

④ 인증심사원 및 강사의 보유 현황

⑤ 규칙 제 13조 각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⑥ 연수업무규정

– 연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때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시 연수기관으로 지정(규칙 제 14조 ②)

–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연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 공고(규칙 제 14조 ③)

① 연수기관 명칭 및 대표자

② 주소 또는 사업자의 소재지

③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연수기관 명칭 등의 변경신고 등(규칙 제 15조)

– 연수기관이 그 명칭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연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 8조(인증기관명칭 등의 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시 동일, 법 제 20조 ②, 규칙 제 16조 ①)

– 연수업무 규정(다음사항 포함 규칙 제 16조 ②)

① 연수의 절차 및 방법

② 연수과정 및 내용

③ 연수자의 관리방법 및 절차

④ 연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⑤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연수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지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법 제 20조 ③).